

IV.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

1.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가.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4장 제11조 6항부터 제11조 8항에 잘 나타나 있다.

<표 IV-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자산운용관련사항

구분	자산운용관련 사항(규약상)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조6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함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1조7항)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하여 3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그밖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 (11조8항)	-이 경우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

특히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1조 7항(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제시되어 있다. 제11

조 7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 3회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영미식보다는 일본식을 보다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②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함으로써 일정한 양적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규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11조 8항(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에서 보듯이 노동부장관에게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자산운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자산 운용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체계

1)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하면 책무로 ①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③ 정부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입자 교육의무(필요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실시위탁가능)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입자는 ①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2>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근로자 교육실시의무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금지의무 · 근로자이익상반행위 금지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저해 금지	
퇴직연금 사 업 자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자산관리계약체결 거부금지	
	가입자손실보전금지	
	특별이익제공금지	
	가입자정보제공금지 특정한 운용방법제시금지	
정 부	세계 등 지원방안강구의무	제21조 (정부의 책무)

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운용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② 퇴직연금 취급실적 제출의무, ③ 이익제공 사전약속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범위의 취득 정보 사용금지의무, 특정운용방법 제시금지의무가 존재한다. 업무범위의 취득 정보사용금지의무는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의무는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정부 각각에 대한 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퇴직연금 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하면 감독유형은 크게 ① 보고 및 조사 ②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③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④ 업무의 협조 ⑤ 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V-3>참조).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감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감독유형(체계)를 보면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등이라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종결에 관한 내용이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종결과 비자발적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는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및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의 폐지시 중단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종결에 대한 기준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 제 28조에는 권한(노동부장관)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 등과 달리 주무 감독기관은 노동부, 간접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근로자퇴직소득법령상의 퇴직연금 감독사항

구분	수탁자책임관련 사항(감독)		관련근거
보고 및 조사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의 출석을 요구		법 제22조
	기업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		
시정 조치	사용자	사용자가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23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명령	
	퇴직연금사업자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24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명령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중단이후의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근로자에 지급		법 제26조
업무협조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자료요청가능		법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탁가능		법 제28조

가) 사용자에게 대한 감독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할 수 있는 보고 및 질문·조사권이 존재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는 사용자의 퇴직연금설정·운영이 법령, 규약 또는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위반시정·개선명령권이 존재하며, 특히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시정 또는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퇴직연금운영정지 명령권이 존재하고 있다.

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노동부장관에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시정·개선명령권이 존재하며,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취급정지 또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는 퇴직연금취급정지권, 계약이전명령권이 존재하고 있다.

다) 벌칙

사용자의 책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과태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감독체계를 요약·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크게 ① 퇴직금의 우선변제 ② 퇴직금의 지급 ③ 규약상의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 수급권 보호 등과 같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용자의 도산, 수탁기관의 도산 등에 의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규정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32조

는 점이다. 특히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보면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및 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PBGC에 의한 수급권보호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관련사항

구분	재무건전성관련 사항	관련근거	
퇴직금의 우선변제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법 제9조 1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법 제9조 2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법 제7조	
규약	확정급여형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말 적립해야 할 적립금 수준 명시	법 제10조 4항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명시	법 제10조 5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법 제11조 5항 가목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9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과 탈퇴일시금이 포함될 것	법 제11조 1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	법 제11조 1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	법 제12조	
수급권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및 담보제공불가	법 제25조	

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특징 및 과제

가.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 측면

아직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이 확정된 것도 아닌 시안 단계인 만큼 선진국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와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문제점(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를 보면 개괄적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행 법상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대통령령에 의하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을 보다 세부적으로 최소분산투자규제, 자기투자규제, 총량규제, 의결권제한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에는 단지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각론이라 할 수 있는 세부규제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제재조치 사항 등에 대해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가 계약형 지배구조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의 규제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의 규제감독,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하에의 규제감독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제도별 규제감독의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에 따른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이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에 따른 규제감독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수탁기관(운용기관)의 운용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지침 및 감독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수탁기관의 운용관리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본지침마련이 법상 또는 시행령 등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섯째, 운용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탁기관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법상에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자산운용관련 투자감독체계가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국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연기금 자산평가³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될 것인 만큼 자산 평가는 일반적인 금융 자산의 평가 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금융 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제한을 허용하되, 특정 자산의 투자를 장려하는 형태이거나 자산 운용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에서 아직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31) OECD가이드라인에서는 연기금 자산 평가에 대해 공개적이고 일관성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 및 운용상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투자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투자정책의 목표, 자산·부채 매칭,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투자 정책의 수정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탁자책임 규제감독체계 측면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상에서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금자산운용의 오류 및 실패에 따른 기업 연금의 지급보증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탁자와 관련된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탁자가 수탁기관을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선정하지 않고 조직내부의 이해관계 및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탁자책임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특히 향후 신탁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책임문제가 연금재정의 안전성과 지급보증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결국 현행 퇴직연금체계하에서는 연고주의적 거래형태를 탈피하여 퇴직연금제도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자(수탁자)들의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온정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자산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금기금을 총괄하는 수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충실의무 등 여러 자기책임의무를 강

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수탁자책임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에 의한 지급보증이 확보되도록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수립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이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책임범위, 제재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제재조치면에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물리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감독 차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 재무건전성 측면

현행 예금자보호법상에서는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수탁기관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도산시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됨으로써 퇴직보험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은행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타예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경우 타예금처럼 여러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예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예금의 예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에 비하여 퇴직연금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예치되기 때문에 예금사고발생의 리스크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납입보험료와 운용수익을 연금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운용수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미국 등과 같은 연금급부 보증공사의 설립문제 및 최소책임준비금규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용자 도산시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수급권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사용자 도산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금계리사제도의 도입 등 연금재정의 건전성 검증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금ALM 기법의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규정의 제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상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들은 향후 법안의 수정과정에서, 그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가능한 한 부합되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제3자적 감시기능차원에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체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감독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차원에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미국 등은 선진국에서는 규제감독상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규제완화의 보완조치강화, 충실한 지급보증체제 구축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